

# 프랑스의 언론법제 : "언론 자유의 위배"에 대한 법적 규정

박진우

프랑스 파리 5대학 사회학과 박사과정(사회학 및 언론학 전공)

## 1. 서론

언론에 대한 프랑스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원적인 법제는 바로 1881년에 제정된 <언론 자유에 관한 법률(La loi du 29 juillet 1881 sur la liberté de la presse)><sup>1)</sup>이다. 1881년 7월 29일에 제정된 이 법은 지난 130년 동안 47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오늘날까지 언론 활동 전반에 대한 원칙을 확립하고 또 세부 사항을 규제하는 기본법으로 기능하고 있다.

프랑스의 언론계 종사자들이나 연구자들은 이 법이 16세기 이후 탄생한 근대 국가와 언론의 갈등 양상에 대하여 프랑스 사회가 내놓은 최종 해법이라는 의미를 가진다고 평가한다. 이념적으로 이 법은 1789년 프랑스 혁명 당시에 반포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Déclaration des droits de l'homme et du citoyen)> 제11조에 명시된 '인간의 기본권으로서의 언론 자유의 권리'<sup>2)</sup>를 완전히 성문화시킨 것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가진다.<sup>3)</sup> 또 현실적으로도 이 법은 구체제 하

에서 이루어진 정부의 직접적인 언론 통제, 또한 19세기의 정치체제의 격변 속에서 언론의 자유를 끊임 없이 통제하고자 시도하였던 정부(왕정, 제정, 공화정)의 기도에 썩기를 박았다는 역사적 의미를 가진다. 이 법에 의거하여, 현재 프랑스에서는 언론 자유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어떤 법제의 제정도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완전한 언론 자유의 보장이 '언론 자유의 남용'을 전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1881년 <언론 자유에 관한 법률>은 어떤 경우가 바로 이러한 '언론 자유의 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본 규정들을 그 속에 포함하고 있다. 이 글에서 다룰 내용은 바로 이러한 언론 자유의 남용에 대하여 1881년 언론법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형태의 '피해 구제책'들이다. 하나는 반론권과 정정권의 형태로 독자들이 언론 보도에 이의를 제기하는 방법에 대한 제도적 장치들이며, 다른 하나는 언론법에 의해 이른바 "언론 자유의 위배(infractions)"로 규정된 6가지 사항들

1) 이 법의 원문은 <http://www.legifrance.gouv.fr/texteconsolide/PCEAA.htm> 참조.

2) 제11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 "사상과 의견의 자유로운 교환은 인간의 가장 소중한 권리들 가운데 하나이다. 모든 시민은 따라서 법에 의해 이러한 자유의 남용에 대하여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자유롭게 말하고 쓰고 이를 출판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3) 이 점은 프랑스 헌법위원회에 의해서도 재천명된 바 있다. 프랑스 헌법위원회의 1984년 12월 10일 및 11일자 판결(n° 84-181)은 1881년 법률에 대하여 언론 자유의 원칙을 천명한 "헌법적인 가치를 가진" 텍스트라는 문구를 담고 있다.

에 대한 검토이다. 그 이전에 우선, 이러한 논의의 기본 텍스트로 기능하고 있는 1881년 법률의 몇 가지 주요 사항들에 대하여 간단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 2. 1881년 <언론 자유에 관한 법률>의 의미와 피해 구제 제도

1881년 <언론 자유에 관한 법률>은 앞서 말한 대로 언론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 텍스트이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이 법률로 인해 구조화된 프랑스의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 구제 제도의 대략적인 특징을 우선 간략히 살펴보겠다. 프랑스의 경우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 구제 제도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른바 ‘사법 원칙(Le principe juridique)’<sup>4)</sup>, 즉 언론 보도를 둘러싼 모든 갈등은 100% 사법부의 판단에 맡긴다는 것으로서, 프랑스의 언론 보도에 대한 각종 피해 구제 제도들 역시 이러한 대전제 하에서 기능하고 있다.

### 사법 원칙

앞서 1881년 언론법의 탄생 과정에 대해 간략히 지적하였지만, 이 법 자체는 프랑스의 국가가 앞으로 언론 보도의 문제에 대해 개입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장치도 마련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선언한 것이기

도 하다. 따라서 1881년 언론법은 제1조에 “인쇄와 배포는 자유롭다”는 조항을 명시한 다음, 자유로운 언론사 설립에 필요한 최소 요구사항(발행인, 주소, 소유구조 등 독자들에게 반드시 제공되어야 할 기본적인 정보의 제공 의무)을 규정하고, 이어서 무엇이 언론 자유의 권리에 위배되는가를 규정하는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결국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 구제는 그 보도로 인한 피해자 당사자가 이를 사법부에 제소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국가 스스로도 완전한 언론 자유의 구현 속에서 언론 보도에 따른 여러 가지 피해가 다양하게 속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따라서 언론법을 통해 일단 보도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전적으로 “법에 의거하여”,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 이러한 피해로부터 구제받도록 한다는 원칙을 도입하였다. 따라서 프랑스의 언론보도에 따른 피해 구제 제도의 근본 원칙을 흔히 “사법 원칙(principe juridique)”이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이는 결국 1881년 언론법을 통해 “실사 저널리스트가 자신의 직무에 있어 실책을 저지른다 하더라도, 이를 규제하기 위해 국가가 다시 개입하는 것을 결코 원치 않는다”, “만약 저널리스트가 실책을 저질렀다면, 그는 오직 법과 재판관 앞에서만 그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근본 원칙에 대해 국가나 언론계 모두가 동의하였다는 뜻이기도 하다.<sup>5)</sup>

프랑스의 언론 관련 재판의 경우 소송의 대상자는

4) 이러한 ‘사법 원칙’은 우리에게 익숙한 영미권의 제도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언론학자 앙리 피제아는 이를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프랑스에서의 언론의 자유는 미국의 경우와 달리 강력한 법적 영향력 아래에서 행사된다. 미국에서는 표현의 자유라는, 자연법에 속한다고 판단된 영역에 대한 입법부의 개입이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는 미디어의 활동을 검토하거나 통제하는 자율적인 전문기관을 찾아볼 수 없다. 프랑스에서는 언론 중재기관이 존재하지 않으며, 옴부즈맨 제도는 거의 없다고 말할 수 있으며, 또 이 문제에 관한 전문적인 저널도 찾아볼 수 없다. 언론계 스스로의 자기 비판을 위한 일관되고 꾸준한 노력이 결여되어 있다. 프랑스에서는 법적인 개입주의가 강하지만, 직업윤리에 관련된 고민은 다른 나라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 Henri Pigéat, *Médias et déontologie : Règles du jeu ou jeu sans règles*, Paris, PUF, 1997, p. 215.

5) 장-마리 샤롱(Jean-Marie Charon) 교수와의 인터뷰 중 (언론중재위원회, 2007년 11월 5일).

해당 언론사의 발행인<sup>6)</sup>이며, 재판은 해당 언론사의 소재지 지방법원에서 행해진다. 프랑스의 경우 80% 이상의 언론사들이 파리 지역에 위치하기 때문에, 파리 지방법원에는 언론 관련 소송만을 전담하는 별도의 부서 - 언론법정(Chambre de presse) - 을 운영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대략 연간 4~5천 건의 언론 관련 재판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진다.

### 언론 중재기관의 도입에 관한 논의

언론 관련 소송이 과도하다는 현직 종사자들의 인식은 사실 100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것이다. 따라서 이로 인한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나아가 언론인들이 자신들의 작업 현장에서 직업 윤리 규정을 보다 엄수할 수 있게 만드는 일종의 '중재 기관'의 설립 필요성에 대한 주장은 오래전부터 존재해 왔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프랑스의 저널리즘계에서 이러한 주장이 결코 다수의 목소리였던 적은 없었으며, 이는 현재도 마찬가지이다.<sup>7)</sup>

이러한 목소리에 대한 대응은 저널리스트 스스로가 오래전부터 마련해 왔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직후에 설립된 프랑스의 저널리스트 노조(SNJ, Syndicat National des Journalistes)가 마련한 최초의 저널리스트 윤리 강령<sup>8)</sup>은 13개 조항에 걸쳐 저널리즘 직무 수행에 있어서 지켜야할 자체적인 규약을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저널리스트들의 오류에 대하여 사법부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에, 자신들 스스로가 노조 차원에서 자체적인 직업 규율을 통해 이를 규제하고자 한 시도에 해당한다. 자체 규율을 마련한 것이다. 전후 이러한 노력은 1971년 뮌헨 협약<sup>9)</sup>에 의해 전 유럽 차원으로 확대되었다.

### 위배 조항의 구체적인 명시

1881년 언론법의 가장 큰 특징은 - 법률 제23조부터 - 과연 어떤 행위가 '언론 자유의 남용' 혹은 '언론 자유의 원칙에 대한 위배'에 해당하는지를 대단히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법의 이러한 존재방식 역시 앞서 언급한 대로 1881년 당시의 정부와 언론 간의 갈등 관계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1870년 보불전쟁의 패전 이후 수립된 제3공화국 하에서 번성했던 사이비 언론에 대한 정부의 각종 통제가 초래한 10년 간의 사회적 대논쟁 이후, 바로

6) 반드시 해당 신문사, 방송사의 사장을 대상으로 소송해야만 한다. 해당 기사를 작성한 기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소극적이거나) 일선 저널리스트들을 과도한 사법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가지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특정 언론사의 모든 기사는 데스크와 발행인의 편집 책임 하에서 작성되는 것인 만큼 그 책임 역시 발행인이 져야 한다는 일종의 전통에 따른 것이다. 그렇지만 1990년대 이후 언론 관련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언론사의 사장과 더불어 해당 기사의 작성 기자를 함께 소송하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7) 중재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세력으로는 프랑스의 경제사회이사회(Conseil Economique et Social)를 꼽을 수 있다. 미셸 뮐러(Michel Muller)가 대표 집필한 경제사회이사회 보고서 〈일간신문의 미래를 위한 다원성과 독립성 보장 방안(Garantir le pluralisme et l'indépendance de la presse quotidienne pour assurer son avenir)〉(2005년 7월)이 대표적이다. 이 보고서의 우리말 번역은 한국언론재단에서 출간된 바 있다(2006년). 원문은 <http://www.ces.fr/rapport/rapsec/RS044430.pdf> 참조. 그 외에도 2000년대 이후 다수 등장한 프랑스의 언론개혁운동 단체들이 바로 이러한 기구를 통한 프랑스 저널리즘의 퀄리티 회복을 주장하는 대표적인 사회운동 세력이라고 말할 수 있다.

8) 공식명칭은 〈프랑스 저널리스트들의 직업적 의무에 대한 헌장(La Charte des devoirs professionnels des journalistes français)〉이다. 이 강령은 1938년 1월에 한 차례 개정되어(이 과정에서 1개 조항이 추가되었다)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원문은 [http://www.snj.fr/article.php3?id\\_article=65](http://www.snj.fr/article.php3?id_article=65) 참조.

9) 1971년 독일 뮌헨에서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저널리스트 노조들이 모여 채택한 유럽 차원의 공동의 저널리즘 윤리 강령을 말한다. 원문은 [http://www.snj.fr/article.php3?id\\_article=66](http://www.snj.fr/article.php3?id_article=66) 참조.

이러한 방식이 정부와 언론계 그리고 시민사회 전체가 합의할 수 있었던 유일하게 실질적인 언론 자유의 보장 방식이었기 때문이다.<sup>10)</sup> ‘사법 원칙’의 도입은 결국 무엇이 언론 자유의 완전한 실현에 위배되는 것인지를 규정한 다음, 이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의 자유를 허용해 주는 형태의 법제정을 요구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대하여 이 법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선언적인 총론을 규정한 다음, 각종 세부조항들의 제약을 끊임없이 명시함으로써 사실상 ‘언론 자유를 부정하는 법’이라는 오랜 비판이 제기되는 것 역시 사실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내에서 이러한 ‘기념비적인 법률’을 근본적으로 수술해야 한다는 대담한 목소리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 민사 소송 우선의 원칙

또한 이 법은 만약 특정 언론사가 법률에 명시된 것과 같은 ‘위배’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이에 대한 처벌은 공권력에 의한 처벌(형사처벌)과 민사상의 책임을 묻는 처벌 형태로 나뉠 수 있다. 언론법은 사안별로 민사 소송의 대상인지 아니면 민·형사 소송 모두가 가능한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에는 피해 당사자에게 양자 중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그리고 언론법에 의해 규정된 피해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대부분 민사상의 처벌이 부과되는데, 이는 해당 언론사에 벌금을 부과하고 이 사실을 독자들에게 공지토록 함으로써 언론사에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벌금 지출, 재판에 따른 언론사의 공신력 하락에 의한 독자 수 감소)을 가함으로써 저널리즘 일탈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다. 사생활 보호와 명예훼손 그리고 전달해서는 안 되는 각종 정보들에

대한 규정들은 원칙적으로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저널리스트에게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사례는 사실상 없다.

### 3. 반론권 및 정정권

프랑스 언론의 역사에서 반론권(le droit de réponse) 제도의 효시는 프랑스 혁명 당시로 거슬러 올라간다. 1799년 ‘500인 회의(Le Conseil des cinq-cents)’에서는 언론 자유의 과잉 분출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 언론에 의해 명예를 침해당한 자에게 반론 기사를 허용하는 최초의 법안을 제시한 바 있다. 반론권 조항은 1881년 언론법에 의해 모든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하여 독자들이 행사 가능한 권리로 확립되었으며, 1993년 1월 1일자 부분 개정을 통해 방송에 대한 반론권 행사도 가능해 졌다. 아울러 1881년 언론법은 정부에 대하여 특별히 보도 내용에 대한 정정권을 부여하기도 하였다.

#### (1) 반론권의 개시

정기 간행물에 대한 반론권 개시와 그 절차는 언론법 제13조 및 제13-1조에 규정되어 있다. 반론권은 일간지 및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비밀간지 - 그러니까 모든 정기 간행물 - 를 대상으로 “모든 사람들” - 즉 모든 자연인과 법인 - 이 행사할 수 있다. 프랑스의 반론권은 기사 속에 “지명되거나 지칭된 모든 사람”이 기사의 형식, 내용 및 본질 여하에 관계없이 일단 자신이 기사 속에 거명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개시가 가능한 것이다. 이 점에 있어 사실에 반하는 보도 내용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민사상의 보상에

10) Christophe Charle, *Le siècle de la presse : 1830-1939*, Paris, Seuil, 2004 참조.

가까운 성격을 가지는 영미권의 반론권 행사 방식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즉 프랑스에서의 반론권은 자신의 방어 수단이라는 성격을 넘어서, 언론사에 대한 독자들의 공격 수단이라는 보다 적극적인 성격을 함께 가지는 제도이다. 이것 역시 1881년 언론법이 제정될 당시의 시대적 맥락과 깊은 관련을 가진다.<sup>11)</sup>

## (2) 반론권의 행사

### 요구 (기간, 방법, 크기)

인쇄 매체의 경우 반론권은 1881년 언론법 규정에 의거, 해당 기사가 출간된 이후 1년 이내에만 행사 가능하다. 방송에 대한 반론권은 해당 프로그램이 방송된 지 1주일 이내에 행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프랑스 해외령이나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2주일 이내에 반론권을 개시할 수 있다. 인쇄 매체의 경우 1년의 기간은 너무 길다는 비판은 오랫동안 계속되고 있지만, 이 조항에 대한 개정의 움직임은 아직 없다.<sup>12)</sup>

독자(시청자)의 반론권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제기된 경우, 언론사의 발행인(편집인)은 이를 게재할 의무를 진다. 인쇄매체의 경우 반론은 반론권을 야기한 해당 기사와 동일한 수준의 길이로 제한되며, 또한 “최고 50줄에서 최대 200줄”로 제한된다. 즉 원래 기사의 길이가 200줄을 넘길 경우, 반론권은 최대

200줄까지만 가능하다.<sup>13)</sup> 방송의 경우, 1987년 방송법 시행령에 의거, 반론문의 텍스트는 타이프로 30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반론 메시지의 전체 방송시간은 2분을 넘길 수 없다.

인쇄매체의 발행인은 반론을 접수한 후 일간지는 3일 이내에, 주간지 이상의 정기 간행물은 접수 다음 날로부터 가장 최신히 이를 게재하여야 한다. 1881년 언론법 제13-1조에는 반론은 반론을 야기한 원래 기사와 “같은 위치에, 같은 글자체로” 게재되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현실적으로 ‘같은 위치에’는 거의 지켜지지 않지만, ‘같은 글자체로’는 대단히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다. 방송의 경우, 방송사의 책임자는 반론 요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접수 사실을 반론 제기자에게 통보해야 하며, 반론권을 야기한 방송이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반론을 방송해야 한다(1987년 방송법 시행령 제5조). 방송의 경우, 반론의 방송 형식은 원칙적으로 반론권 개시자가 요구하는 텍스트가 그대로 시청자들에게 전달되어야만 한다. 또한 반론 메시지는 원래의 메시지와 동일한 시청자들을 보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동일한 방식으로 방송되어야 한다. 그리고 1987년 방송법 시행령은 이와는 별도로, 반론 보도 시에는 반론을 야기한 원래 프로그램과 메시지의 제목뿐 아니라, 방영 일자 및 시간을 자막으로 제시하여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다.

### 반론 게재의 거부권

11) 이는 인쇄매체에 대한 것으로, 방송에 대해서는 경우가 조금 다르다. 1990년 개정 방송법에 의거 제도적으로 확립된 방송에 대한 반론권 개시 조항에 따르면, 방송에 대한 반론권은 이미 방송된 프로그램이 명예나 명성의 침해를 야기하는 비난을 담고 있을 경우에만 개시 가능하다. 그러니까 방송의 경우에는 오히려 영미권 식의 ‘소극적 방어’ 및 ‘피해 보상’의 수단으로서의 성격이 더욱 강하다.

12) 2004년 7월 제정된 전자통신법에 의거, 인터넷 언론의 기사에 대한 반론권 조항이 새로 추가되었다. 이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의 기사에 대해서도 인쇄매체와 동일하게 해당 기사의 최초 게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반론권 개시가 가능하다.

13) ‘줄(lignes)’이라는 단위는 신문 편집방식의 변화와 더불어 현재에는 대단히 모호한 규정으로 남아있다. 현실적으로는 ‘글자 수’ 단위로 측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아예 언론법 조항(제13-1조)을 ‘글자 수’ 단위로 바꾸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아직 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인쇄매체의 발행인은 자신에게 제기된 반론권에 대하여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그럴 경우 이 문제는 사법부의 판단으로 넘어간다. 1881년 언론법 제65조에 따르면, 반론권이 개시된 이후 3개월 이내에 인쇄매체의 발행인은 법원에 반론 게재의 거부 의사를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이 경우 접수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만약 그 사안이 선거 기간 중 후보자와 관련된 것일 경우, 법원은 24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현실적으로 1982년 이후 반론을 게재할 사유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 발행인이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에 대한 법원의 관례들이 이어지면서, 현재는 반론권 행사에 대한 법적 소송의 건수가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

### (3) 정정권

1881년 언론법은 반론권과는 별도로 정부 기관에 대하여 정정권(le droit de rectification)을 언론매체에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언론법 제12-1조에 의거, 정정권의 행사 주체는 정부 기관들 - 즉 “공권력의 보유자(dépositaire de l'autorité publique)”-이며, 대상은 “공권력의 집행과 관련된 사안들”, 즉 공권력의 집행이 부정확하게 보도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스스로 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에 해당한다. 정정권은 현행법상 인쇄 매체에 대해서만 개시 가능하다. 방송에 대한 정정권 개시를 다룬 법조항은 현재까지도 마련되어 있지 않다. 공영방송에 대해서는 방송 규제기관의 개입을 통하는 형태로 간접적으로 정정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sup>14)</sup> 현재로서

는 민영방송에 대한 정정권 개시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다. 모든 인쇄매체 및 공영방송에 한한다.

인쇄매체에 대한 정정권 행사의 개시 방법과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언론법 속에 들어있지 않다. 다만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개시해야 한다”는 말만 들어 있는데, 관례를 통해 그 기간 등의 구체적인 절차는 반론권의 그것과 동일하다고 간주되고 있다. 대신 언론법 제12-2조에는 정정문은 정기간행물의 가장 최신의 다음 호에 게재되어야 하며, 정기간행물의 표지 상단에 실려야 한다고 규정한다. 글자체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반론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원래 기사와 동일한 글자체를 사용해야 한다고 유추 가능하다. 만약 발행인이 정정문의 게재를 거부하였을 경우, 정부 기관은 반론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 언론사를 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프랑스 정부는 국내 언론에 대한 정정권 행사를 사실상 중단한 상태이다. 이는 1981년 5월에 집권한 사회당 후보인 프랑소와 미테랑의 선거 공약이기도 하였다. 그의 당선 이후 프랑스 정부는 프랑스 언론에 대한 일체의 정정권 행사를 스스로 중단하였는데, 이것이 프랑스 정치권의 일종의 ‘관례’로 자리잡음으로서 이후의 어떤 후임 대통령도 프랑스 언론에 대하여 정정권을 행사한 사례는 없다. 다만 이는 프랑스 국내의 정치 현안에 대한 것으로, 외국의 국가원수에 대한 프랑스 언론의 보도에 대하여 프랑스 정부가 정정권을 실행한 사례 - 이 경우의 대다수는 외국 국가원수에 대한 프랑스 언론의 ‘모독’의 사례들이다 - 는 다수 존재한다.<sup>15)</sup>

14) 이는 1990년 방송법 개정을 통해 신설된 것이다.

15) 이는 프랑스 정부와 해당 국가의 외교적 친선 유지의 목적에서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1984년 유럽에 대한 대륙간 미사일 배치를 선언한 로널드 레이건 미국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시에 프랑스 언론들의 ‘인격모독적인 논평들’에 대한 정정권을 들 수 있다.

#### 4. 언론 자유의 '위배'의 6가지 조항

이와 더불어 1881년 언론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위배하였을 경우 민사상의 제재가 가해지는 '언론 자유의 위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언론법 및 이후의 추가 조항들을 살펴본 다음, 이를 둘러싼 몇 가지 대표적인 판례를 검토함으로써 규정의 구체적인 운용 방식들을 간략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 (1) 명예훼손

언론 자유의 위배에 해당하는 6가지 조항 가운데 가장 대표적이고 또 가장 많은 위배 사례를 가지는 것은 역시 명예훼손이다. 1881년 언론법 제29조에는 명예훼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 “어떤 사실에 대하여 개인 혹은 법인을 비난함으로써 그의 명예나 평판을 침해하는 모든 주장과 비난은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이러한 주장 혹은 비난을 직접 출판하거나 인용의 형태로 출판하는 것은 설사 그것이 의혹을 제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또는 명시적으로 당사자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지만 (...) 그 당사자에 대한 추론이 가능할 경우에도 처벌 가능하다”. 그렇지만 이 규정은 또한 프랑스 저널리즘계의 수많은 논란의 원천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에 대한 주장과 비난”에 대한 개념 규정, “명예와 평판”을 해친 것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가능성 그리고 해당 기사가 과연 특정 인물이나 회사를 ‘직접 겨냥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의 문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결코 손쉬운 것이 아니다. 다만 여기에는 사실과 가치 판단의 엄격한 분리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을 지적해 두고자 한다. 실제로 이러한 명예훼손은 엄격히 ‘사실’에 관한 것에 대해서만 적용되며, 따라

서 예컨대 “특정 인물은 총리가 될 자격이 없다”와 같은 형태의 가치 판단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이 적용되지 않는다.

명예훼손의 경우 피해 당사자는 해당 언론사에 대하여 민사 재판 혹은 형사 재판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처벌 역시 해당 명예훼손의 유형 그리고 재판의 유형에 따라 다양하다. 예컨대 피해자가 단순한 개인일 경우 벌금은 1만 2천 유로이지만, 그 피해자가 공직(공무원, 군인, 법관, 정부관료 및 이에 준하는 직위)에 종사하는 자일 경우 벌금은 4만 5천 유로로 상승한다. 만약 명예훼손의 내용이 인종차별과 관련 있을 경우에도 벌금은 4만 5천 유로이다. 이와 더불어 명예훼손에 따른 금전적 피해액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데, 그 금액은 일반적으로 1유로에서 1만 5천 유로까지 다양하게 청구되고 있다. 또한 명예훼손의 경우 범정은 일반적으로 금전적 배상과 더불어 해당 간행물의 일정한 지면에 벌금 납부에 관한 재판 사실을 독자들에게 공지할 것을 명령한다.

##### (2) 중상(中傷)

언론사에 대해 적용되는 중상 행위는 무엇보다도 과도한 언어 표현을 통한 것을 가리킨다. 언론법 제 29조 2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상에 해당하는 표현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째는 모욕적인 표현, 경멸적이거나 욕설에 해당하는 용어이며, 두 번째는 그것이 식별 가능한 대상을 향한 경우이다. 중상에 대한 소송은 해당 보도로 인한 ‘피해자’ 당사자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만약 대상자가 이미 고인일 경우에는 유족이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언론사에 대해서는 1만 2천 유로의 벌금이 부과되지만, 만약 그 중상이 인종차별인 내용일 경우에는 2만 2천 5백 유로로 그 액수가 늘어나며 또한 6개월의 징역을 함께 선고받을 수도 있다.

### (3) 모독

언론법 제26조 및 제36조에 따르면, 프랑스의 대통령, 외국의 국가 원수 및 행정 수반, 외국 정부의 외무부 장관에 대한 모독 행위는 처벌받게 된다. 이는 프랑스와 외국 정부 사이의 우호적인 외교관계의 유지를 위한 목적을 위해서이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언론법은 그 ‘피해자’가 해당 언론사를 민사 소송을 할지 형사 소송을 할지 결정할 수 있으며, 민사 소송으로 결정될 경우 명예훼손과 마찬가지로 언론사에 4만 5천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 과연 ‘모독’이 어디까지인지, 언론사의 정치적 비판과 모독의 경계가 어디인지 그리고 중상이나 명예훼손과 어떻게 차별화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프랑스의 판례에 따르면 이에 대하여 중상 및 명예훼손의 사례를 포함하면서, 이와 더불어 보다 일반적인 차원에서 만평이나 사진 이미지를 통한 당사자의 존엄성이나 신중함을 공격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또한 이 조항은 유럽인권협약 제10조에 규정된 언론 자유에 관한 규정과 서로 상치된다는 점에 대한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실제로 2001년 가을 프랑스를 방문한 모로코 국왕 하산 2세(Hassan II)에 대한 일간지 <르몽드>의 보도가 ‘외국의 국가원수에 대한 모독’이라고 판단한 프랑스 정부는 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받은 바 있다. 그렇지만 <르몽드> 역시 이를 스트라스부르의 유럽인권법정에 제소, 프랑스의 언론법 제36조가 유럽인권협약에 배치된다는 정반대의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하였다.<sup>16)</sup>

또한 이 문제를 둘러싼 실제적인 정치적 맥락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모독 조항은 앞서 언급한 정정권 조항과 마찬가지로 1981년 미테랑의 집권 이

후 사실상 행사가 중단된 상태이다. 하지만 프랑스 정부는 앞서 언급하였듯이 외국의 수반에 대한 프랑스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는 정정보도 청구권의 행사는 물론, 모독 혐의에 따른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

### (4) 거짓 정보의 전달

1881년 언론법 제27조에는 일체의 수단을 통한 거짓 정보나 의도적인 목적을 가지고 조작된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을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언론사에 대하여 4만 5천 유로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만약 해당 거짓 정보가 전시에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정부를 대상으로 한 것이나 혹은 군의 사기와 기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일 경우, 그 벌금액수는 13만 5천 유로로 높아진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조항은 거의 집행되고 있지 않은데, 이는 언론 현장에서의 현실상 거짓 정보와 오보를 구별하고 또 조작된 정보의 ‘의도’를 법적으로 판별해 내기가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1998년에 광우병에 대한 우려가 유럽을 휩쓸 당시, 많은 언론들은 소비자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는 ‘패닉’ 현상을 보도하면서 이것이 “국가 경제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다”고 보도하였는데, 당시 프랑스의 낙농업자들은 이것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의도적으로 조작된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를 제소한 바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사법부의 의견도 일치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파리 지방법원은 낙농업자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것이 “저널리스트들이 소비자들에게 의도적으로 공포심을 유발시키기 위하여 작성한 거짓 정보”에 해당한다고 보았던 반면, 대법원에서는 해당 저널리스트들의 의도성을 명백히 유죄 입증하

16) CEDH 25 juin 2002, Colombani/France, *Légipresse*, 2002-III, p. 159; CA Paris 3 juillet 2002, *Légipresse*, 2002-III, p. 163.

기가 불가능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하였다.<sup>17)</sup>

### (5) 전달이 금지된 정보

간략히 말해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한 일체의 정보나 이미지 그리고 현저히 반사회적인 내용을 담은 이미지는 1881년 언론법에 의해 '전달이 금지된 정보'로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둘러싼 갈등은 끊이지 않는다. 많은 저널리스트는 프랑스 국내의 각종 판례와 유럽 판례의 차이로 인해 이 문제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각급 재판소 역시 마찬가지이다.

#### ① 게재 금지된 이미지(사진 및 영상)

우선 언론법에 의해 전달(게재)이 금지된 이미지로 규정된 것은 대략 다음 세 가지이다. 첫째는 무죄로 추정되는 사람이 수갑이 채워져 있거나 포박되어 있는 이미지들이다. 이 조항은 2000년 6월 15일자로 제정된 이른바 “무죄 추정의 원칙의 실질화”를 위한 법률에 의해 언론법 제35조 속에 삽입된 것이다. 이 법은 오랫동안 프랑스 언론에 의해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이러한 종류의 이미지들을 금지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진 것으로, 구체적으로 해당 이미지가 해당 범죄(자로 추정되는)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 또 거기에서 수갑이나 포승이 노출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 대해 언론법 제48-7조에는 언론사 발행인에게 1만 5천 유로의 벌금을 부과하며, 또한 그 이미지의 피해자에게 해당 언론사를 민사 및 형사 소송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고 명시되

어 있다.<sup>18)</sup>

두 번째는 범죄 희생자의 존엄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내용을 담고 있는 이미지들이다. 이것 역시 위에서 언급한 2000년 6월 15일자 법률 - 이른바 '기구(Guigou) 법' - 에 의한 것으로, 그 발단은 1999년 10월에 발생한 코르시카 경찰 서장인 클로드 에리냐(Claude Erignag)의 피살 사건에 관한 보도 이미지를 둘러싼 소송이다. 당시 프랑스의 주요 언론들은 코르시카 분리주의자들의 테러 공격을 받고 도로에 쓰러져 있는 에리냐 서장의 시신을 앞다투어 보도하였는데, 이에 대해 유가족들은 것처럼 도로에 쓰러진 모습을 보도하는 것은 비록 시신일 지라도 희생자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2001년 2월 20일자 대법원 판결에서는 시신일 지라도 그의 '인격의 존엄성'을 존중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렇지만 이는 프랑스(및 해외)의 언론계 관행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이다. 실제로 '인격의 존엄성'에 대한 법률은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에서 유래한 것으로, 일선 저널리스트들은 경찰 서장이라는 국가 공권력의 대표자가 테러리즘 공격을 받은 것은 '사생활 보호'와 무관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저널리스트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미지들은 언론법에 의해 1만 5천 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또한 그 피해자에게 해당 언론사를 민사 및 형사 소송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sup>19)</sup>

세 번째는 사법 재판 시 청증석에서 촬영한 이미지들이다. 이는 법정에서 청증은 일체의 사진 및 비디오 촬영기나 녹음기를 휴대할 수 없다는 형법 제226-1조를 반영하는 것이다. 언론법 제38조에는 이런 형태로 촬영되거나 녹음된 이미지나 음성을

17) TGI Paris 10 juin 1997, et CA Paris 7 janvier 1998, *Légipresse*, 1998-I, p. 149.

18) TGI Paris 17e chambre, Sirven/Paris Match, 20 novembre 2001, *Légipresse*, 2002-III, p. 17.

19) TGI Paris 17e chambre, 24 juin 2003, *Légipresse*, n° 204, 2003-III, p. 120.

보도할 경우에는 언론사에 4만 5천 유로의 벌금이 부과되며, 해당 촬영 및 녹음의 원본을 법정에서 압수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다. 그렇지만 언론법 제 38조 부록 조항에는 해당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재판장이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촬영이나 녹음을 특별히 허가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sup>20)</sup>

## ② 재판 및 수사 정보를 담고 있는 정보의 전달 금지

현재 진행 중인 사건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공식 자료(경찰의 수사 기록이나 검사의 송고장)의 일부 혹은 전체를 언론사가 전제 보도하는 것은 언론법 제38조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저널리스트가 해당 사건에 대하여 스스로 취재한 다음 이에 대한 독자적인 기사를 작성한 것은 이 법과는 무관하며, 이는 1931년 7월 2일자 법률에 의해 보호받는다. 이 조항은 그러니까 언론사가 해당 기록 자체를 그대로 공개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저널리스트가 취재 과정에서 획득한 경찰이나 검찰의 비공개 자료 혹은 비밀 정보를 보도를 통해 공개하는 것 역시 언론법 제38조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이와는 별도로 해당 사건의 유형에 따라 그 정보 공개 금지의 폭이 보다 포괄적인 경우도 존재한다. 우선 언론법 제38조 2항에는 사법위원회(Conseil Supérieur de la Magistrature)의 활동 및 결정 일체

에 대한 보도를 금지한다는 조항이 들어있다. 이는 사법부의 결정이 여론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한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항인데, 언론은 사법위원회의 활동에 관하여 위원회의 위원장이 보도 자료를 통해 공개한 내용만을 보도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만 7천 5십 유로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특정 사건에 대한 재판부 구성원들 각자의 의견(다수 의견, 소수 의견)을 명시적으로 보도하는 것 역시 금지되어 있다. 이는 영미권에서 흔히 개별 재판관이 자신의 독자적인 의견을 언론에 표명하는 것과는 지극히 대조적이다. 그리고 명예훼손에 관한 재판, 가족사(친자관계 확인, 이혼 및 결혼 무효, 낙태, 입양 시 입양 아동의 원래 가족사(史) 관련 정보 등)에 관한 재판<sup>21)</sup> 내용의 보도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 그리고 특정인의 유죄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의 보도도 금지되어 있으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사건(명예훼손, 자살, 유기)이나 성범죄의 경우에는 사건 자체 및 희생자에 관한 일체의 보도가 금지되어 있다.<sup>22)</sup> 마지막으로 군, 경찰, 세관 등의 일부 행정조직에 종사하는 인원들의 인적 사항에 관한 정보들 역시 언론을 통한 공개가 금지되어 있다.<sup>23)</sup>

## (6) 표명이 금지된 의견

마지막으로 1881년 언론법에 의해 그 표명이 금지된 의견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의견 표명의 자유는

20) 대표적인 사례가 모리스 파퐁(Maurice Papon) 재판이다. 그는 1942 ~ 4년 독일군 점령 당시 보르도 경찰서장으로 근무하면서 해당 지역의 유대인 색출 작업에 동조한 바 있는데 전후에도 이 사실을 숨기면서 공직 생활을 계속하였지만, 1981년부터 그의 과거가 폭로되기 시작하였다. 1997년 그는 보르도 지방법원에 정식으로 기소되었고, 1998년에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재판은 “후세를 위한 역사 교육의 목적”으로 특별히 녹화 및 화면의 TV 방영이 허가되었다.

21) 언론법의 규정과는 달리 ‘가족사’에 해당하는 재판에 대한 보도 금지 조항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지난 2001년에 있었던 가수 이브 몽탕(Yves Montand)의 친자 확인 소송을 둘러싼 언론보도 및 법적 분쟁 이후, 이 규정의 적용이 현재는 대폭 강화되었으며 대단히 엄격하게 집행되고 있는 편이다.

22) 이것 역시 관례적으로 거의 지켜지지 않다가 최근에 집행이 다시 엄격해졌다. TGI Nanterre 14 mars 2001, Duchemin/Paris Match, *Légipresse*, 2001-I, p. 117.

23) TGI Paris, 17e chambre 8 novembre 1999, *Légipresse*, n° 170-37, 2000-I, p. 104.

앞서 살펴보았듯이 헌법적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의 금지 조항은 대단히 엄격하게 마련되어야 하며 또한 한정된 것일 수밖에 없다. 언론법 제정 이후 시대적 변화에 따른 후속 개정 그리고 각종 판례들 속에서 현행법상 표명이 금지된 의견의 종류는 아래 3가지이다.

### ① 범죄 및 일탈의 선동

언론법 제23조에는 언론 보도가 범죄나 일탈을 선동하여 실제로 그러한 결과가 나왔거나, 아니면 단지 그러한 시도가 행해졌을 경우에 대해서도 처벌 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이 조항은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 하나는 언론 보도가 범죄나 일탈을 직접 선동하여 실제로 그러한 사태가 벌어졌을 경우인데 이 경우에 언론사는 당연히 언론법에 의한 제재를 받는다. 뿐만 아니라 만약 해당 언론사가 범죄와 직접 연루되었다는 혐의가 밝혀질 경우에는 그 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받아야 한다. 두 번째는 실제로 그러한 사태가 벌어지지 않는 경우이다. 언론법 제24-2조에 따르면, 선동 내용이 다음 5가지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것의 실현 여부와 관계없이 언론사 대표에게 징역 5년 및 4만 5천 유로의 벌금형을 내린다고 규정되어 있다 : 1) 생명에 대한 의도적인 위협, 2) 개인의 인격 전체에 대한 의도적인 위협, 3) 성적인 폭력, 4) 개인에게 위협적인 절도, 강도, 파괴, 훼손 및 손상 행위 그리고 5) 국가의 근본적인 이해에 대한 위협을 포함하는 범죄 및 일탈.

### ② 처벌 가능한 변명

또한 공공질서나 개인의 신변에 대한 위협적 행위를 변호하는 언론 기사 역시 언론법에 의해 금지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변명(apologie)'이라는 개념은 지난 2002년, 나치 독일의 전쟁 범죄에 대한 언론 보도를 둘러싸고 벌어진 재판을 통해 새롭게 규정된 것이다. 이에 따르면 '변명'이라는 개념은 "독자들에게 전쟁 범죄에 대하여 이 범죄가 가지고 있는 도덕적인 차원을 제거시킴으로써 독자들로 하여금 호의적인 가치 판단을 유도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sup>24)</sup> 이후 다음 5개 주제 - 생명 그리고 개인의 인격 전체에 대한 의도적인 위협 및 성적인 폭력이 범죄적인 상황(즉 전시 상황을 말한다) 속에서 이루어진 경우, 일체의 전쟁 범죄, 반인도적 범죄, 적군과의 내통 범죄 그리고 형법 4부 2항에 명시된 테러리즘 행위 - 에 대한 '변명'은 언론법에 의해 처벌(징역 5년 및 4만 5천 유로의 벌금) 가능하다.

그렇지만 프랑스의 이러한 언론법 조항은 지난 1998년 유럽인권법정에 의해서 유럽인권협약에 위배된다는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1940년 독일군의 파리 점령 이후 수립된 친독·반유대주의적 괴뢰 정부인 이른바 비시(Vichy) 정부의 수반인 페탱(Pétain) 원수에 대한 역사적 평가를 둘러싼 논쟁은 당시 페탱 원수의 보좌관이던 작가 자크 이조르니(Jacques Isomi)가 1985년부터 일간지 <르몽드>에 게재한 일련의 페탱 옹호 논설로부터 시작되었다. 이에 대하여 프랑스 대법원은 1993년 11월 16일, 자크 이조르니와 <르몽드> 발행인에게 언론법 상의 이 조항을 근거로 처벌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이에 불복한 자크 이조르니는 이를 유럽인권법정에 제소하였는데, 여기서 1998년 9월 23일자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유는 프랑스 법정이 이 사건에 대해 언론법 제24-2조를

24) TGI Paris 17e chambre 25 janvier 2002, *Légipresse* 2002-1, p. 26, n° 190-01.

적용한 것이 오늘날의 민주주의 사회의 가치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필요한 처벌로 판단되지는 않기에 이조르니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는 이유 때문이다. 유럽인권법정은 이 조항에 대하여 회원국 각국의 역사에 대한 평가는 회원국 스스로의 결정에 맡겨야 하지만, 이 문제가 보통법 상의 범죄 및 일탈에 대한 변명 조항에 반드시 해당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③ 반인도적 범죄의 옹호

이 조항은 1990년 7월 13일자로 제정된 이른바 게소(Gayssot) 법 - 모든 형태의 “인종주의, 반유대주의 및 타인종 혐오”에 대한 처벌 조항을 담고 있는 법안 - 에 의해 언론법 제24조의 부록으로 첨부되었다. 게소 법은 2차 대전 당시의 유대인 수용소의 존재 및 유대인 학살 사실을 부정하는 이른바 ‘수정주의(négationisme)’ 적 주장에 따른 1980년대 프랑스 사회의 논쟁을 반영한 것이다. 언론법은 이를 받아들여 제24조의 부록에서 모든 형태의 학살 등 반인도적 범죄를 옹호하는 주장에 대한 처벌 조항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1993년 2월 23일자로 이 사항은 유럽인권협약의 제10조 2항에도 추가되었다.

2003년 2월 3일 게소 법의 확장 개정이 이루어짐으로써, 그 처벌 대상의 범위는 더욱 늘어났다. 이에 따라 인종 차별 및 인종적 증오에 대한 선동, 인종적 모욕 및 상해에 해당하는 언론 보도 역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옹호로 간주된다. 다만 예외조항으로 이러한 주장을 전개한 자가 해당 인종, 민족 혹은 종교 집단에 소속된 자일 경우에 한해서는 ‘인종차별적 의견’으로 간주되지 않는다.<sup>25)</sup> 언론법 제24-10조에

는 이 조항을 위배한 자에 대해서는 징역 5년 및 벌금 4만 5천 유로의 형과 아울러, 일시적으로 공민권 정지 및 인쇄 출판의 권리 정지를 명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5. 마치며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1881년 언론법은 프랑스의 언론 활동에 대한 기본법으로서 지금까지도 그 의미를 잃지 않은 텍스트이다. 이 법은 언론 탄압의 오랜 기억에서 벗어나기 위한 최종적인 사회적 합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날로 커져가는 언론 보도의 ‘권력’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언론 소비자들의 ‘피해’를 어떻게 최소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 1881년 언론법은 동시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처방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언론의 상업주의적 성격에 따른 무책임한 보도, 사생활 침해 등은 일찍이 프랑스 대혁명 직후부터 그리고 19세기 후반기부터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한 바 있으며, 1881년 언론법은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한 대책으로서의 성격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그리고 언론 자유가 무제한 적용될 수 있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닌 만큼, 또한 언론의 거대 기업화로 인해 언론 자유의 수호보다는 언론 자유의 남용이 더욱 문제시될 수밖에 없는 현대 사회에서 이 법률은 오히려 후자의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앞서 살펴본 대로 언론 보도에 따른 모든 분쟁을 사법적 절차를 통해 해소하고, 또한 언론 자유를 규정한 법 속에 다소 과도해 보일 정도로 세부적인 제

25) 이는 언론법 제24조 6항에 명시된 내용이다. 쉽게 말해서 어느 유대인이 반유대주의적 주장을 펼칠 경우에는 이 조항을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뜻이다. *Légipresse*, n° 199, 2003-IV, p. 15.

한 규칙들을 언론법 속에 설정해 놓은 것은 바로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는 기본 원칙을 전사회적으로 합의한 것이라는 의미를 가진다. 그럼에도 최근 프랑스 사회에서는 언론이 '권력에 대한 비판자'를 넘어 마침내 '또 하나의 권력'이 되었다는 비판과 논쟁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다. 언론의 존재 형태가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접어든 현대 사회에서 언론 보도에 따른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절차의 모색은 이미 전 세계의 공통의 과제로 부상하였으며, 프랑스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 그런 면에서 각국의 사회제도의 특수성 여부를 떠나서 향후 끊임없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이러한 논쟁을 프랑스 사회가 어떤 형태로 수용해 나가고 자국의 제도에 어떤 변화를 줄 것인지를 꾸준히 관찰해 보는 것은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무척 클 것으로 생각된다. □

#### 〈참고문헌〉

- Bigot, Christophe, *Connaitre la loi de 1881 sur la presse*, Paris, Victoires Éditions, 2004.
- Charle, Christophe, *Le siècle de la presse : 1830-1939*, Paris, Seuil 2004.
- Charon, Jean-Marie, *Réflexion et propositions sur la déontologie de l'information*, Rapport à Madame la Ministre de la Culture et de la Communication, 1999.
- Derieux, Emmanuel, *Droit de la communication*, 5e éd., Paris, L.G.D.J., 2003.
- Louvier, Jacques et Hovine, Axelle, *Lancer sa publication de presse*, Paris, Victoires Éditions, 2003.
- Müller, Michel, *Garantir le pluralisme et l'indépendance de la presse quotidienne pour assurer son avenir*, Paris, Conseil Économique et Social, Juillet 2005.
- Pigéat, Henri, *Médias et déontologie : Règles du jeu ou jeu sans règles*, Paris, PUF, 1997.
- Revue *Légipresse*, 1997-2007 (각 연도판).